

일반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내규(2024.1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제2장(입학), 제5장(자격시험), 제6장(학위논문) 및 대학원 입학전형시행내규 제2장(일반전형) 및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제3장(종합시험), 5장(학위논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내규는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에 설치하는 각 학위과정(석사,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에 적용된다.

제2장 입학전형

제3조 (일반전형) ① 일반전형의 선발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병행한다.

②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로서 시행한다.

1. 대학 및 대학원 성적
2. 학업 및 연구계획서(소정양식)
3. 기타 대학원 또는 학과에서 정하는 서류

③ 구술시험은 다음 각 호로서 시행한다.

1. 전공에 대한 지식
2.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3. 전공에 대한 적성
4. 기타 대학원 또는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④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각각의 배점은 소정양식으로 정리하여 매뉴얼화 한다.

제4조 (특별전형) 특별전형의 선발도 일반전형에 준하되, 특별전형의 특성상 ①경력증명서, ②추천서(학과 소정양식)를 추가로 제출한다.

제5조 (편입학전형) 편입학전형의 선발도 일반전형에 준한다.

제6조 (평가방법) 모든 전형은 지원자의 성적, 전공, 연구계획서, 학업의지와 가능성, 기타 입학심사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한다.

제3장 수업

제7조 (석사 과정) 석사 과정은 총 24학점 중 자과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동일계열의 타학과 관련 교과목 수강시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박사 과정) 박사 과정은 총 36학점 중 자과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동일계열의 타학과 관련 교과목 수강시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동일계 인정 범위) 동일계 인정 범위는 인문·사회과학 분야, 융합학과, 경제 및 경영 학과로 정한다. 단, 교육환경 변화에 의거 기타 학과를 동일계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 내용 및 본 학과 개설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4장 종합시험

제10조 (적용범위) 본 규칙은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석사,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종합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1조 (응시자격)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2조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안보·재난관리학과 사무실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험과목) ①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② 시험과목은 공히 다음 16개 과목 중에서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리포트로 대체할 수 있다.

1. 비교정보론
2. 조직관리론
3. 정보실패론
4. 국가전략론
5. 이스라엘안보정보체계론
6. 미국정보공동체연구
7. 위기관리와 홍보전략
8. 재난관리와 자원봉사
9. 재난정보실패연구
10. 재난관리 및 대응 사례 연구
11. 국가안보와 테러
12. 국가안보와 정보
13. 국가안보와 안전 세미나
14. 포괄안보와 국민안전
15. 정보개혁통제론
16. 국제개발협력

제14조 (합격점수) 종합시험의 합격 인정 점수는 과목당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보충규정)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학위청구논문

제16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학과에서 인정한 KCI 등재(후보)지에 논문 1편(최대 3인 공동연구발표 논문 포함)이상 발표(논문게재증명서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이 제출자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편입학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공개 논문발표) 석사,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논문심사 일정이 시작되기 최소 3주 이전에 학과 교수 및 학생들의 참여하에 공개 논문발표를 실시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